

종합거래계좌약관

제1조(목적)

이 약관은 위탁자거래, 저축자거래, 수익자거래 및 기타의 거래를 종합적으로 거래할 수 있는 계좌의 개설 및 이용에 대해서 고객과 (주)BNK투자증권(이하 '회사'라 한다)간의 권리·의무관계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 ① '종합계좌'란 고객이 1개의 계좌를 이용하여 모든 계좌를 일괄 관리할 수 있는 종합적인 계좌관리시스템을 말한다.
- ② '종합계좌거래'란 종합계좌를 이용하는 모든 종류의 거래를 말한다.
- ③ '종합증권카드'란 종합계좌거래를 가능하게 하는 증권카드를 말한다.
- ④ '개별계좌'란 종합계좌 내에 포함되어 있는 각각의 계좌를 말한다.

제3조(종합계좌의 이용)

- ① 고객이 종합계좌약관, 매매거래계좌설정약정서에 동의하고 종합계좌개설 신청서를 제출하여 종합거래를 개설함으로써 다음 각호의 매매거래종류를 기본으로 이용할 수 있다.
 1. 한국거래소에 상장된 증권의 장내매매거래
 2. 한국거래소에 상장된 증권의 장외매매거래
 3. 제1호 내지 제2호에 해당되지 않는 증권의 장외매매거래
- ② 고객은 제1항 각호의 거래종류 외에 관계법규 또는 감독기관 등에 의해 회사에 취급이 허용된 종류의 거래를 개시하고자 할 경우 종합계좌 개설과 별도로 매매거래계좌 (이하 '개별계좌'라 한다)를 개설하여야 한다.

제4조(종합계좌의 개설)

- ① 고객이 회사와 처음 거래를 개시하고자 할 경우 종합계좌를 개설하여야 한다.
- ② 고객이 종합계좌를 개설한 때에는 별도의 이용신청서 없이 다음 각호의 부가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1. 종합증권카드를 이용한 개별계좌의 자산 인출
 2. 종합계좌내 개별계좌간 자금대체 업무
 3. 종합계좌내 전 개별계좌의 잔고조회서비스
- ③ 고객은 종합계좌 내에 거래를 위한 개별계좌를 추가로 개설할 수 있다.

제5조(종합계좌거래인감 등록)

고객이 종합계좌 개설을 신청할 때에는 종합계좌거래인감(또는 서명감)을 등록하고 인감이 필요한 모든 거래시 등록된 종합계좌거래인감(또는 서명감)을 사용하여야 한다.

제6조(종합계좌용 비밀번호의 등록)

고객이 종합계좌 개설을 신청할 때에는 종합계좌용 비밀번호를 등록하여 비밀번호가 필요한 모든 거래시 종합계좌용 비밀번호를 사용하여야 한다.

제7조(실지명의에 의한 계좌개설 및 관리)

고객이 종합계좌개설 신청서를 제출할 때에 회사는 고객이 실명확인증표에 의해 고객 본인의 실지명의임을 확인한 후 종합계좌를 개설한다.

제8조(종합계좌의 해지 등)

- ① 고객이 회사에 개설한 종합계좌를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종합증권카드를 회사에 반납하고 거래 해지신청을 할 수 있다.
- ② 고객이 종합계좌를 해지하는 경우 모든 개별계좌도 해지되며, 어느 한 개의 개별계좌라도 거래가 유지되고 있는 경우에는 그 개별계좌의 거래를 종료한 이후에 종합계좌를 해지할 수 있다.

제9조(종합증권카드의 이용)

고객은 종합증권카드를 이용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주요거래에 이용할 수 있다.

1. 영업점 창구에서의 자산인출 거래
2. 현금자동거래(ATM)에서의 자금인출 거래

제10조(현금 및 증권의 수납)

고객이 증권 등의 매입대금을 입금 또는 유가증권의 실물을 입고할 경우 입금(고)전표를 작성한 후 현금 또는 증권과 함께 창구에 제출하며, 회사는 수납한 현금 또는 증권에 이상이 없을 경우 입금(고)확인서를 고객에게 교부한다.

제11조(현금 및 증권 등의 출납)

- ① 고객이 현금의 출금 또는 증권의 출고를 청구할 경우 출금(고)전표에 출금할 금액, 증권 및 종합계좌용 비밀번호 등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고 등록된 종합계좌거래인감 또는 서명감을 날인한 후 종합증권카드와 함께 창구에 제출한다.
- ② 회사는 고객이 제출한 종합계좌거래인감 및 종합계좌용 비밀번호가 등록된 사항과 일치하였을 경우 현금 또는 증권을 고객에게 지급하며 만약 필요한 경우 추가로 실명확인증표를 요구할 수 있다.
- ③ 회사는 현금 또는 증권의 지급과 함께 출금(고)확인서를 고객에게 교부한다.

제12조(개별계좌간 자금대체업무)

- ① 종합계좌를 개설한 고객은 종합계좌 내 본인 개별계좌 간 자금대체서비스 (이하 '계좌대체'라 한다)를 이용할 수 있으며 그 이용은 다음 각호와 같이 실시한다.
1. 계좌대체거래가 가능한 개별계좌 : 고객 본인 종합계좌내의 입출금이 자유로운 모든

개별계좌

2. 계좌대체거래 이용시간 : 08시부터 16시까지(영업일)

- ② 고객이 계좌대체거래를 요청하였을 경우 회사는 즉시 출금을 지정한 개별계좌에서 현금을 수반하지 않고 대체출금하여 입금을 지정한 개별계좌로 대체입금 처리한다.
- ③ 회사는 제2항의 대체거래시 고객의 종합계좌거래인감 또는 서명감이 직접 날인된 전표의 작성 없이 대체거래를 실시할 수 있다.
- ④ 고객은 대체거래가 완료된 후 출금을 지정한 개별계좌의 잔고변동사항과 입금을 지정한 개별계좌의 잔고변동사항을 비교하여 대체거래에 의문점이 있거나 이상이 발생하였을 경우 즉시 거래영업점에 연락하여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제13조(종합증권카드, 종합거래인감의 분실 및 고객정보사항의 변경)

- ① 고객이 종합증권카드나 종합거래인감을 분실하였을 경우 지체 없이 회사 영업점에 전화 또는 방문 등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 ② 종합증권카드를 분실 또는 훼손 등에 의하여 사용할 수 없을 때에는 회사 영업점에서 재발급 받아야 한다.
- ③ 종합거래인감을 분실하였거나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새로운 종합거래인감을 회사 영업점에 등록하여야 한다.
- ④ 고객의 정보 중 주소, 전화번호는 전화에 의해 변경이 가능하며 그 밖의 정보는 회사 영업점에서 서면신고에 의해 변경하여야 한다.

제14조 (약관의 변경 등)

- ① 회사는 약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변경내용을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1개월 전에 고객이 확인할 수 있도록 회사의 영업점에 갖추어 두거나 인터넷 홈페이지, 온라인 거래를 위한 컴퓨터 화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를 통하여 게시한다. 다만, 자본시장법 등 관계법령 또는 거래소 업무규정의 제·개정에 따른 제도변경 등으로 약관이 변경되는 경우로서 본문에 따라 안내하기가 어려운 급박하고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내용을 앞의 문장과 같은 방법으로 개정 약관의 시행일 전에 게시한다.
- ② 제1항의 변경내용이 고객에게 불리한 것일 때에는 이를 서면 등 고객과 사전에 합의한 방법으로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1개월 전까지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기존 고객에게 변경 전 내용이 그대로 적용되는 경우 또는 고객이 변경내용에 대한 통지를 받지 아니하겠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③ 회사는 제2항의 통지를 할 경우 “고객은 약관의 변경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전의 영업일까지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라는 취지의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 ④ 고객이 제3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전의 영업일까지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 ⑤ 회사는 약관을 회사의 영업점에 고객이 확인할 수 있도록 마련해 두거나 게시하여 고

객이 요구할 경우 이를 교부하여야 하며, 인터넷 홈페이지, 온라인 거래를 위한 컴퓨터 화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에 게시하여 고객이 약관을 확인하고 다운로드(화면출력 포함)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5조(예탁자산의 양도 및 질권설정)

고객은 회사의 동의를 얻어 현금 또는 금융투자상품 등 예탁자산을 양도하거나 질권(채무자가 돈을 갚을 때까지 채권자가 담보물을 보유할 수 있고,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을 때는 그 담보물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빌려준 돈을 받을 수 있는 권리)설정 할 수 있다.

제16조(면책사유 등)

- ① 고객은 회사에 등록된 종합계좌거래인감, 종합계좌용 비밀번호 및 교부받은 종합증권카드를 타인이 임의로 사용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 ② 회사는 고객이 출금(고)전표에 날인한 종합계좌거래인감을 상당히 주의하여 기 등록된 사항과 일치함을 확인하고, 현금 또는 증권 등을 지급하였을 경우 이로 인해 발생한 불이익에 대해서 회사의 책임 있는 사유가 없는 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전자금융거래 시 접근매체(증권카드, 비밀번호 등)의 위조나 변조로 발생한 사고, 계약체결 또는 거래지시의 전자적 전송이나 처리과정에서 발생한 사고,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전자적 장치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 망에 침입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획득한 접근매체의 이용으로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고객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회사는 과실 여부를 불문하고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단, 고객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 등 전자금융거래 이용에 관한 기본약관에 정한 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전자금융거래법 등 관련 법령에 고객에게 유리하게 적용될 수 있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령을 우선 적용한다.
- ⑤ 회사는 천재지변 및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적인 사유에 의하여 발생한 고객의 손해에 대하여 책임지지 아니한다.

제17조(분쟁조정)

고객은 회사와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회사의 민원처리기구에 그 해결을 요구하거나 금융감독원, 한국금융투자협회 등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제18조(기타)

- ① 고객이 전화·전신 등에 의하여 매매거래, 부가서비스의 이용을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사가 위탁자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회사는 위탁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녹음 등의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 ② 종합계좌의 개별계좌에서의 매매거래시 개별계좌의 약관이 이 약관에 우선한다.
- ③ 이 약관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규에 의하거나 또는 일반적인 상관례에 따른

다.

④ 이 약관에 의한 거래 중 전자금융거래에 관하여는 ‘전자금융거래이용에 관한 기본약관’ 및 전자금융거래법령이 우선 적용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약관은 2009년 12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약관은 2015년 4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약관은 2016년 4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본 약관은 금융소비자보호법 및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절차를 거쳐 제공됩니다.